운영규정 개요

Ⅰ. 기본정보

기관명	나무향기 재가복지센터	**지정일자**	2024. 08. 01
급여종류	방문요양	**정원**	-
대표자	이승재 외 1명	**전화번호**	063) 636-7174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 자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고길 10		

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①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②인정서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 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 목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서비스 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사전조사 → 계약체결 →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서비스 제공 →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모니터링
배상책임 면책범위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경우 배상의무가 있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되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 때

Ⅲ.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계약자 의무	**[이용자]** 1.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기관]**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보호자]**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급여비용 등 비용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